

자 료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재정경제원 고시 1995-23호

제 1 절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관리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거주자와 외국환관리규정 제12장 제2절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북한지역에의 투자 및 북한지역 사무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대북투자 업종이 금융·보험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 4 조 투자의 방법

거주자와 현지법인의 북한지역에의 투자(이하 “대북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북한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증권 또는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는 방법
2. 제1호의 법인에 대하여 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상환기간 1년 이상에 한함)을 대부하는 방법
3. 북한지역에 지점을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그 지점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북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제 5 조 적용규정

- ① 제4조 1, 2, 4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제4조 제3호의 북한지점 및 북한지역 사무소(이하 “북한지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절 법인설립 등의 방법에 의한 투자

제 6 조 투자의 요건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다.
 1.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규정대상이 되는 불량거래처가 아닐 것
 2. 투자가가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투자수행능력이 있을 것
-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다.

1. 시설투자의 금액, 부동산취득, 소요운전자금 등 자금운용계획과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2. 생산 및 매출계획이 시설규모와 시장수요 등에 비추어 적정할 것
3. 투자원금 및 과실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익계획이 적정할 것

제 7 조 투자의 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현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현지법인의 대북투자의 경우, 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최초 해외투자시 허가 등을 한 기관에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북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북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서 사본
2. 투자에 관한 최종합의서 사본
3.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부속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 부속명세서)
4.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의 변경승인서 사본

제 8 조 의견요청

제6조 2항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투자금의 송금 등

- ① 대북투자신고를 한 자(이하 “대북투자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북한에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북투자자가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물자를 반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투자금 등의 회수

- ① 대북투자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투자의 원금 또는 과실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대북투자자가 신고한 사업을 청산하거나 투자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대북투자자는 협력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해 투자사업을 즉시 청산하여야 한다.
- ④ 대북투자자가 투자금액을 감액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감액한 투자금 또는 잔여재산을 즉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의 종료
2.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
3. 증권, 지분 및 사업 등의 양도
4. 제4조 제4호의 경우 사업목적의 달성을 등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제 11 조 대북투자의 사후관리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여금 대북투자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북

투자사업 실적을 분석·검토하며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게 하는 등 대북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 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북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일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권, 지분, 대부채권의 취득 및 변동보고서 : 취득 또는 변동후 1월 이내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
3. 대부원리금 회수보고서 : 즉시
4. 청산보고서 : 청산후 2월 이내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대북투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대북투자에 대한 필요조치의 시행

① 재정경제원장관은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 제2항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현지법인인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중대한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의 해외투자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당해 현지법인의 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직접 당해 해외투자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사업의 분석결과 경영이 부실한 대북투자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북투자의 승인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재정경제원장관을 경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3 절 북한지사

제 14 조 북한지사의 구분

북한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북한지점”
2.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북한사무소”

제 15 조 북한지사의 설치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은 북한지사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다.
- ② 북한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16 조 북한지점의 영업기금

- ① 북한지점을 설치한 자가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북한지점에 영업기금(당해 북한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 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북한지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영업기금 대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은 당해 지점의 인정된 영업활동을 위하여 유용하여야 한다.

제 17 조 북한사무소의 설치비

- ① 북한사무소의 설치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북한사무소의 설치비는 북한사무소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르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구입비 또는 임차료(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지불하는 기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동산집기류(자동차를 포함한다)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 영선비(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를 포함한다)
 4. 전화, 텔레스 등 통신관계 설치비
 5.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본적 지출비용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중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북한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설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비 지급인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지급을 중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의 정산결과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인증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제 18 조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

- ①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북한사무소의 활동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한다.
- ③ 기본경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전액을 지급하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 가스 및 수도료
2. 전신전화료
3. 동산임차료, 부동산 사용료 및 주택수당을 받지 않는 주재원의 주거용 주택임차료(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제세공과금
5. 현지인력의 고용에 따른 보수
6. 기타 북한사무소의 운영에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 ④ 기타경비는 제3항의 기본경비 이외의 경비로서 그 지급한도는 사무소당 월 미화 2만불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불로 하며 경비용도에 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⑤ 제4항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⑥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활동비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인증일부터 180일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기타경비 지급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 19 조 북한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

- ① 북한지점을 설치한 자(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북한지점은 제외한다)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북한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할 순이익금의 처분 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 남한에 회수
 3. 당해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 자료 ●

제 20 조 북한지사의 경비사용에 관한 유지관리의무

북한지사는 농지사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및 기타자금을 보유·사용함에 있어서 각 지사별로 독립장부를 비치하여 그 보유·사용·차입 및 대부내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 21 조 북한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

- ① 북한지사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지사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북한지사가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종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북한지를 설치한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반기별 영업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의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부, 주재원 수 등에 대하여 각 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22 조 북한지사의 폐지 등

- ① 북한지를 폐지하거나 그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폐지 또는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상은 북한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지사의 폐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을 경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긴의할 수 있다.
 1. 당해 북한지사 또한 이를 설치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북한지점의 결산결과 3회계연도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이익발생 전망이 불투명

한 경우

3. 기타 당해 북한지사의 현지활동상황 및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사의 폐지신고를 하거나 폐지지시를 받은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제자산처분대전을 지사를 폐지한 즉시(폐지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지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남한에 회수하고 당해 북한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제자산처분명세서와 그 처분대전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증명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현지금융

① 거주자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에 설치한 현지법인(이하 “북한 현지법인”이라 한다) 및 북한지점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당해 현지금융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북한 현지법인 또는 북한지점(이하 “북한 현지법인 등”이라 한다)이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 없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주자가 승인받은 대북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북한 및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2. 북한 현지법인 등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 다만,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이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자금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시설투자를 위한 것일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자금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북한 현지법인 등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전년도 매출실적(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초년도 예상매출액)의 100분의 4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 ④ 북한 현지법인 등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내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그 차입원리금의 정당한 상환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현지금융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한 외국환은행의 장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지금융의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현지금융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 ⑥ 재정경제원장관의 현지금융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현지금융 인증을 받은 자 및 북한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없이 현지금융을 받은 경우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가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는 당해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금융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분기 첫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바에 따라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북한 또는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⑧ 지급보증은행의 장이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4 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보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재정경제원장관 및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2항의 신고 : 즉시
2. 제12조 제1항의 보고 : 1월 이내
3.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 : 즉시
4. 제17조 제1항의 인증 : 1월 이내
5. 제18조 제5항의 허가 : 1월 이내
6. 제19조의 결산보고 : 1월 이내
7.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 : 1월 이내
8. 제22조 제1항의 신고 : 즉시
9. 제22조 제3항의 보고 : 1월 이내
10.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인증, 제6항의 현금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 제7항의 인증 : 1월 이내

제 25 조 권한의 위임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지침 제13조,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옥고를 기다립니다

1. 본지는 북한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실 글은 학술 논문이나 시사성있는 글로서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게재될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합니다.
2. 보내신 글은 본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본 연구원의 동의없이 전재할 수 없습니다.
4.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 독자 의견도 삽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 「통일경제」에 실린 글들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다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관해 제언하고 싶은 독자께서는 원고지 양식으로 사회 통일경제센터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 소정의 고료와 월간『통일경제』 1부를 증정해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 110-2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 746-8067

FAX : 746-8050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원고 접수 기준」

○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나옵과 같이 정한다.

인구/논란 : 70매 내외 시사특집 : 40매 내외

- 이달의 초점 : 20매 이하 독자 의견 : 10매 이하

○ 원고는 「아래와 같은」 2.0판 이상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月刊 「統一經濟」 회원 가입 안내

▶ 금년 하반기부터 정기구독에서 회원제로 바뀝니다.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746-6787(회원제 담당자) FAX 746-6790

▶ 연간 회비는 60,000원입니다

외환은행 061-13-40879-9

예금주: 現代經濟社會研究院